

의안번호	제 371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347 회)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4월 1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연월일 : 2016년 4월 1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 수강료 면제 대상 확대 (안 제3조)
-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및 반환(퇴거) 근거 신설 (안 제9조, 제10조)
- 수강료 및 대여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1, 별표3)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공연장,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자료실, 북 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야외 부대 공간 등 센터 운영목적 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이란 문화·교육·학술·교류·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이용·대여·임대·입주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가. 교육수강생

나. 관람객

다. 시설을 임차하는 단체 및 개인

라. 시설에 입주하는 단체 및 개인

마. 그 밖에 공익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교육 및 강좌에 대한 수강료

나. 교육·행사·강좌 등 일회적인 목적을 위한 시설 대여료

다. 센터 시설에 입주하는 단체 및 개인의 시설 임차료

라. 입주한 단체 및 개인의 시설 임대에 따른 관리비

마. 문화, 예술, 전시 이벤트 등에 대한 관람료

제3조(수강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센터가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
6. 그 밖에 공익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등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 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하는 자
2. 수강 목적을 위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킨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대여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제6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대여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9조(임대료의 납부 및 반환 등) ① 도지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개인을 시설에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단체 및 개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예정 단체 및 개인이 입주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은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르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단체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센터 운영을 저해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용도사용 및 구조변경을 임의로 하거나, 임대료 및 관리비를 3회 연속 연체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성평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관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시설에 입주하는 단체는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에 입주한 자가 퇴거할 때에는 관리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2조(시설 사용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의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도지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3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설치한 설비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 정 별 수 강 료 기 준(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7시간 이상 15시간 이내	10,000	
16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15,000	
31시간 이상 50시간 이내	20,000	
50시간 이상	30,000	

※ 적용기준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교육생에게 별도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수 강 료 반 환 기 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3]

대 여 료 기 준(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물명	기 준	금 액	냉·난방비
대 강 당	1회/2시간	50,000	30,000
문화이벤트홀	1회/2시간	40,000	25,000
다목적실	1회/2시간	40,000	25,000
강 의 실	1회/2시간	20,000	20,000
영상미디어실	1회/2시간	20,000	20,000

※ 적용기준

1. 주말, 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 금액의 20% 가산
2. 주간(09:00 ~ 18:00), 야간(18:00 이후)
3. 매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

[별표 4]

대 여 료 반 환 기 준(제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8조제1호		납부한 대여료 전액
제8조제2호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한 대여료 전액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한 대여료의 9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전일	납부한 대여료의 8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않음

[별표 5]

임 대 료 반 환 기 준(제9조제4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9조제3항제1호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날	납부한 임대료 전액
제9조제3항제2호	사용개시일 2개월 이전	납부한 임대료 전액
	사용개시일 2개월 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	납부한 임대료에서 총 임대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사용개시일 15일 전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	납부한 임대료에서 총 임대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 관계법령 발취

### □ 양성평등 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

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



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times$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div$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